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10. .

제 출 자: 원주시장

1. 공공기관 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 가. 원도심 상권의 야간 유동인구 창출 및 전통시장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2026 강원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말야시장 사업」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 추진 필요
- 나. 본 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공고(제2026-20호)에 따른 도 공모 사업으로 신규조성 사업의 1년차부터 2년차까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사업 운영 담당
- 다. 주말야시장은 매대 조성, 운영자 모집·교육, 콘텐츠 개발, 홍보·마케팅, 기반시설 정비 등 종합적 사업 관리가 요구되는 사업으로서, 도 단위 사업 수행 경험과 상권 활성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전문성·책임성·안정성 확보 필요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명: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 나. 위탁기간: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다. 위탁사무 내용
 - 주말야시장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판매·체험부스 및 문화공연 프로그램 기획·운영
 -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현장 운영 총괄
- 라. 사업 개요
 - 사 업 명: 2027년 문화의거리 주말야시장
 - 장 소: 원주시 중앙동 문화의거리 일원
 - 기 간: 2027. 5.~12. ※ 행사기간: 2027. 8.~10.
 - 규 모: 판매부스 20동, 체험부스 10동, 소규모 공연무대 1식, 편의시설 등
 - 사 업 비: 200백만 원(도비 60백만 원, 시비 140백만 원)

마. 수탁자 선정방식

- 수탁기관: (재)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
- 선정방식
 - 본 공모사업은 강원특별자치도경제진흥원이 사업 운영을 담당함에 따라 해당 기관에 위탁 추진
 -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거쳐 최종 선정

3.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최종

가. 총사업비: 200백만 원(도비 60백만 원, 시비 140백만 원)

나. 산출내역

(단위: 천 원)

구분	소요예산	산 출 근 거
계	200,000	
직접 사업비	180,000	○ 행사장 조성 80,000천 원× 1식 = 80,000천 원 - 먹거리·플리마켓 부스, 취식공간, 경관조명 등 ○ 행사 운영 70,000천 원 × 1식 = 70,000천 원 - 운영인력, 안전관리, 행사장 관리 등 ○ 공연 프로그램 운영 30,000천 원 × 1식 = 30,000천 원 - 문화공연 및 무대 운영 등
간접 사업비	3,800	○ 출장여비 800천원 × 1식 = 800천 원 ○ 회의운영비 1,500천 원 × 1식 = 1,500천 원 ○ 사업운영비 1,000천 원 × 1식 = 1,000천 원 ○ 사무용품 구입 등 500천 원 × 1식 = 500천 원
위탁 수수료	16,200	○ 180,000천 원(직접사업비) × 9% = 16,200천 원

4. 공공기관 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전문성 확보: 축제 운영 경험과 역량을 보유한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기획·운영의 전문성 강화

나. 효율성 증대: 행정의 직접 수행 대비 전문 인력 활용을 통한 인력·비용 절감 및 체계적 사업 관리와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 구축 가능

다. 공익성 확보: 지역 상권과의 연계, 관광객 유치 등을 통해 공공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5. 기타사항

- 2026. 2. 2026년 주말야시장 공모사업 선정
- 2026. 5.~12. 1년 차 야시장 사업 추진
- 2027. 4. 202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 2027. 5.~12. 2년 차 야시장 사업 추진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 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기존 수탁기관의 운영성과와 사업의 연속성·안정성을 고려하여 재계약을 통해 효과적인 시설 운영을 지속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탁사무: 원주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나. 위 치: 원주시 우산초교길 10, 강원사회적경제혁신타운 203호
다. 규 모: 사무실 92.4㎡
라. 위탁금액: 350,000천 원/년
마. 위탁기간: 2027. 1. 1.~2029. 12. 31.(3년)
바. 수탁자 선정: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재계약 심사·의결
사. 위탁사무내용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수행
 - 사회적경제기업 컨설팅, 교육, 판로지원 및 홍보
 -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구축 및 사회적경제조직 간 협력사업 등

3. 참고사항

- 가. 추진근거
- 「원주시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24조
 -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제5조
- 나. 추진일정
- 2026. 8.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서 수립
 - 2026. 8.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재계약 심사·의결
 - 2026. 10. 의회동의
 - 2026. 11. 재계약 체결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 2026. . .

제 출 자 : 원주시장

1.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 근거

-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
-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

나. 추진 필요성

-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운영을 위탁
- 창업기업에 대한 맞춤형 보육과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창업생태계 구축

2. 위탁사무 내용

가.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시설물 유지·관리

- 입주공간 관리: 입주기업 유치 및 선정, 입주 관리 전반

나. 창업기업 맞춤형 보육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창업지원 프로그램(멘토링, 사업화 지원, 글로벌 진출 등) 개발 및 운영
- 네트워크 구축: 지자체·기업·유관기관 간 네트워크·협업 체계 구축
- 투자 연계: 창업기업 투자 연계 및 창업펀드를 통한 투자 활성화

3. 위탁시설 개요

가. 일반 현황

시설명	위 치	정원 (현원)	최초위탁일	비 고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우산동 660번지 (상지대학교 내)	6 (-)	2027. 2. (2026. 10. 준공 예정)	부 지 3,200㎡ 연면적 6,741㎡

나. 시설 규모(지하 1층, 지상 6층)

구 분		면적(㎡)	사 용 용 도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소계	6,741.48	총 입주공간(66)
	6층	599.05	피트니스룸, 휴게실, 라운드리룸, 플레이존, 입주공간(4)
	5층	1,022.65	중형회의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폰부스, 입주공간(18), 지원기관사무실
	4층	1,030.95	소형회의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폰부스, 입주공간(20)
	3층	1,026.79	소형회의실, 공유주방, 공유오피스, 폰부스, 입주공간(20)
	2층	1,174.78	스튜디오, 팩토리라운지, 지원기관사무실, 회의실, 입주공간(4)
	1층	818.48	대회의실, 스타트업라운지, 비즈니스상담실, 오픈회의실
	지하 1층	1,068.78	기계실/전기실, ESS배터리실, 재활용보관창고, 지하주차장

4. 민간위탁기간: 2027. 2. ~ 2029. 12.

5.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1,432,000천원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

나. 산출내역

항 목	금액 (천원)	비 고
인 건 비	261,000	초기 운영인력 6명(센터장 1명, 팀장 2명, 팀원 3명)
경상경비	191,000	인적 보험료, 복리후생비, 지급수수료, 전력비 등
사업비(프로그램비)	905,000	강사료, 재료비, 경비 등
일반관리비 및 이윤	75,000	일반관리비(6%), 이윤(10%)
계	1,432,000	

다. 지원예산(최근 3년간): 해당없음

7.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

나. 공공성에 대한 검토 결과

- 서비스 중요성: 지역 창업기업 육성과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전문적이고 지속적인 운영 필요
- 서비스 수혜대상: 입주기업 및 예비·초기 창업기업의 성장단계와 수요에 따른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므로, 관련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운영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
- 서비스 공급의 지속성: 지속적인 창업지원 서비스 제공과 운영의 연속성·안정성 확보를 위해 전문기관의 운영체계 활용이 적정

다. 효율성에 대한 검토 결과

- 민간의 전문성: 창업보육·사업화·투자·네트워크 등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의 활용이 필요함
- 경제적 효율성: 시설관리와 행정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창업지원 업무가 병행되어야 하는 시설로서, 위탁운영이 직영운영보다 비용 효율성이 높고 전문기관의 전문인력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도 유리
- 사업성과 측정 용이성: 구체적인 성과지표 설정과 평가가 가능하여 민간위탁을 통한 성과 중심의 운영관리가 용이
- 서비스 공급의 경쟁적 시장여건: 관련 전문기관 간 경쟁을 통해 전문성과 운영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할 수 있음
- 관리운영의 투명성: 위탁계약과 실적보고·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위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감독 가능

8. 기타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일정

- 원주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026. 10.(제269회 임시회)
- 수탁기관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선정:
2026. 11 ~ 12.
- 위·수탁계약 체결 및 운영 : 2027. 1 ~ 2.

나. 참고사항

- 민간위탁 법적 근거 [붙임 1]
- 민간위탁금 산출내역 [붙임 2]
- 위치도 및 조감도 [붙임 3]

민간위탁 법적 근거

○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위탁) 시장은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무와 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대상사무)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5조(위탁조건 및 기간)

- ① 시장은 민간위탁 대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었을 경우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충분조건: 법령이나 조례에서 민간위탁 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위탁사무
 2. 필요조건: 제6조에 따른 원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
- ② 위탁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하 “위탁기간”이라 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계약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며, 필요할 경우 한 차례에 한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 등)

- 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용자 등이 납부하는 이용료, 수수료, 그 밖의 비용(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을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전액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입금의 범위에서 해당 위탁운영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 ④ 수탁기관이 제1항에 따라 수입금을 징수할 때와 제3항에 따라 수입 대체경비로 직접 사용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2]

민간위탁금 산출 내역

※ 원주그린스타트업타운 운영비 원가산정 용역

(단위 : 천원)

구분	소요예산 (민간위탁금)	산 출 근 거
계	1,432,000	
인건비	261,000	(센터장) 5,453,849원 × 1명 × 12월 = 65,446,186원 (팀 장) 3,550,105원 × 2명 × 12월 = 85,202,520원 (팀 원) 3,060,525원 × 3명 × 12월 = 110,178,900원
경상경비	191,000	(인적보험료) 2,190,407원 × 12월 = 26,284,884원 (복리후생비) 9,000원 × 1,566식 = 14,094,000원 (소모품비) 6,404,100원 × 1식 = 6,404,100원 (통 신 비) 199,210원 × 12월 = 2,390,520원 (홍 보 비) 15,000,000원 × 1식 = 15,000,000원 (지급수수료) 1,027,993원 × 12월 = 12,335,920원 (전 력 비) 9,287,371원 × 12월 = 111,448,455원 (상하수도비) 236,220원 × 12월 = 2,834,640원
사업비 (프로그램비)	905,000	(Pre, Early Start-up Program) 336,000,000원 × 1식 = 336,000,000원 - GW스타트업 아카데미, 스핀오프 아이디어경진대회 등 (Jump Start-up Program) 294,000,000원 × 1식 = 294,000,000원 - 비즈니스타겟 프로그램, 라이브커머스 마케팅 프로그램 등 (Star Start-up Program) 275,000,000원 × 1식 = 275,000,000원 - GW 시장개척단 프로그램, GW IP(지식재산권) 강화 프로그램 등
일반관리비 및 이윤	75,000	(일반관리비) 순원가(451,620,125원) × 6% = 27,097,207원 (이윤) (순원가+일반관리비=478,717,332원) × 10% = 47,871,733원

위치도 및 조감도

위치도



조감도



기업유치 박람회 추진 사무 공공기관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 원주시 타겟기업 유치를 위해 전문기관 위탁을 통한 효율적인 홍보마케팅 추진 필요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조

나. 위탁사무 내용

- 주요 박람회 참가
: 참여 박람회 선정 및 부스 신청, 설치, 운영 등
- 원주시 투자환경 홍보
: 박람회 시 교통입지, 부지, 제도 등 원주시 홍보 대행
- 유치 타겟기업 매칭
: 원주시 유치 타겟 기업 발굴 및 찾아가는 설명회 추진

다. 위탁기관 :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라. 위탁기간 : 2027. 1. ~ 12.

마. 소요예산 : 155,000천 원

바. 추진목표 : 원주시 주요 유치 타겟 산업 박람회 3개 이상 참여

3. 참고사항

가. 공공기관위탁 계약 체결 : 2027. 1월

나. 적정여부 : 적정

한국AI·반도체교육원 교육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 '27년부터 정식 운영('26. 12월 준공)되는 한국AI·반도체교육원의 교육 운영 및 Fab* 가동, 교육원 구축장비 및 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통한 위탁관리가 필요함

* Fab(팹) : 반도체나 디스플레이를 제조하는 생산 공장시설(Fabrication Facility)

2. 주요내용

가.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
-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 「원주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3,4조

나. 위탁사무 내용

- 2027년 교육·실습 프로그램 운영(AI, 설계, 공정, 측정분석 분야 등)
- 특수시설 전문 관리기관을 통한 교육원 시설 관리(Fab, 유틸리티실 등)
- 구축장비 36종 140대(Fab 23종 29대, 영서관 13종 111대) 관리 운용

다. 위탁기관 : (재)강원테크노파크

라. 위탁기간 : 2027. 1. ~ 12.

마. 소요예산 : 1,200,000천 원

바. 추진목표 : 구축장비 활용, 실습 위주의 교육을 통한 첨단산업 전문인력 양성

3. 참고사항

가. 공기관위탁 계약 체결 : 2027. 1월

나. 적정여부 : 적정

2027년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10.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에 따라 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지역 미래산업 육성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출연하고자 함
- 나.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미래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함
- 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2027년도 본예산 편성에 앞서 원주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일반현황

- 설립목적: 원주시 미래산업 및 지역주력산업 육성, 산업디지털 전환 기반조성
- 설 립 일: 2024. 7. 10.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조직인원: 1본부 4부 1팀 / 정규직 현원 16명

나. 2027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	세부내역	
합 계	2,239,609	-	
운영비	1,939,609	○ 인건비	1,170,437,000원
		○ 일반운영비 등	690,122,000원
		○ 수선유지교체비	79,050,000원
사업비	300,000	○ 국제전자제품전시회 (CES) 해외마케팅 지원	300,000,000원

다. 주요사업 추진계획

- AI·디지털 기반 미래신산업 육성 정책 발굴 및 지역 주력산업 고도화 지원
 - 의료·웰니스 AX 및 AI융합산업 생태계 조성
 - 지역 디지털 전환 기반 조성 및 ICT·AI 전문인력 양성
 -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기업 기술사업화·실증 지원
 - 주요 국책·공모사업 추진
 - 의료·웰니스 분야 AX 확산 및 지역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 미래모빌리티·드론 등 전략산업 기반 구축 및 기업지원
 - 국제전자제품전시회(CES) 해외마케팅 지원
 - 국제전자제품전시회(Consumer Electronics Show) 참가지원
- * 세계 3대 IT 전시회로서, IT산업을 중심으로 AI,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등 다양한 산업을 넘나드는 세계 최대 규모의 전시회

라. 기대효과

- 전문인력과 운영기반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원주시 미래산업 육성사업의 지속성과 실행력 강화
- AI·디지털·미래모빌리티 분야 기업지원과 산업 전환 대응을 통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 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미래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출연금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

2027년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사업지원 출연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10.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출연기관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나.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에 따라 원주시의 특화 산업인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함에 따라, 예산(안) 심의 전 원주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얻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일반현황

- 설립목적: 의료기기 산업의 종합적·체계적 육성 지원
- 설 립 일: 2003. 11. 15.
- 설립근거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 조직인원: 3본부 4단 11팀 / 현원 70명(과건 2, 기간제 16 포함)

나. 2027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사 업 명	합 계	도 비	시 비
3개 사업	2,537,500	545,000	1,992,500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1,300,000	-	1,300,000
국제의료기기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	737,500	295,000	442,500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	500,000	250,000	250,000

다. 세부사업 추진계획

○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운영지원

- 인력운영비, 재산세, 건물관리, 시설비 등 재단 운영 소요 경비 지원

○ 국제의료기기전시회 해외마케팅 지원(도비 보조)

- KIMES, MEDICA, WHX-Arab, MediPharm 등 국제의료기기전시회 참가 지원

○ 강원의료기기전시회 개최 지원(도비 보조)

- 수출상담회, 제품 전시 등 기업 마케팅을 위한 GMES 개최 지원

라. 기대효과

- 원주 의료기기 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여 전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원주 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재산출연 등)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제18조에 따라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전에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③ 법인의 해산시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을 시에 귀속한다.

2027년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운영 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10.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및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 제6조(운영비)에 근거한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운영 재원을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내역

- 1) 출연금액: 554,500천 원(전년 대비 16,500천원 증)
- 2) 출연기관: 국립강원전문과학관

나. 국립강원전문과학관(법인) 일반현황

- 1) 설립목적: 과학 체험수요 충족 및 지역 간 과학문화 격차 해소
- 2) 개 관 일: 2025. 11. 7.
- 3) 설립근거

가)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나) 조직구성: 2실 4팀 / 현원 38명(원장1, 일반직 14, 공무원 23)

다. 시설 개요

- 1) 규 모: 지상3층 / 대지면적 24,000m², 연면적 7,006m²
- 2)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북원로 2790(태장동)
- 3) 전시주제: 의료, 생명과학 중심의 과학기술체험관
- 4) 주요시설: 바이오코드관, 메디컬코드관, 기획전시실
- 5) 관람인원: 2025년 29,494명 / 2026년 8월까지 49,530명

라. 2027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합 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지방자치단체			비 고
			소 계	강원특별 자치도	원주시	
합 계	4,843,000	3,734,000	1,109,000	554,500	554,500	
운영비	3,165,000	2,056,000	1,109,000	554,500	554,500	국60:도20:시20
사업비	1,678,000	1,678,000	0	0	0	국비 100%

※ 운영비: 인건비(일반직, 공무원) 및 기본경비 (국비60%, 도비20%, 시비20%)

※ 사업비: 전시운영, 교육문화, 첨단바이오실험실 구축, 관람객 편의시설확충 등(국비 100%)

마. 주요사업 추진계획

- 1) 강원권역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전시·문화행사 추진
 - 상설전시관의 생명·의료분야 콘텐츠 강화
 - 생명·의학 특화 특별전 개최 및 순회전시
 -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콘텐츠 운영
- 2) 과학인재 양성기반 구축을 위한 과학교육 기획·운영
 - 탐구중심 실험 교육 환경 및 첨단 과학교육 인프라 제공
 - 교육지원청 등의 협업을 통한 지역내 과학교육 활성화 기틀 마련
- 3) 내실있는 지역선도형 전문과학관 구축
 - 경영가치 확립으로 내실있고 신뢰받는 과학관 운영
 - 아이디어 발굴 및 실행제도화를 통한 지역선도 전문과학관 구축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관계법령 발췌서

□ 「과학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국립과학관법인의 설립) ① 국가는 해당 권역의 과학문화 확산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 밖 과학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립과학관을 설립한다.

1. 국립대구과학관
2. 국립광주과학관
3. 국립부산과학관
4. 국립강원전문과학관

제6조의5(국립과학관법인의 재원) ① 국립과학관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1. 제2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9조의2에 따른 기부금품
3. 그 밖의 수입금 또는 수익금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과학관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국립강원 전문과학관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6조(운영비) ① 국립강원 생명·의료전문과학관의 운영비는 국가가 60%, 강원도가 20%, 원주시가 20%를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운영비는 당해 연도 과학관 운영을 위한 총비용(전시개발을 위한 사업비는 제외한다)에서 과학관 자체 수입분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10.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가. 강원연구개발특구의 조기 안착과 원주지역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초기 딥테크 기업에 안정적인 투자 기반을 조성하고자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에 출자하고자 함.
- 나.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사업목적: 연구개발특구 펀드 출자에 따른 관내 초기 딥테크 기업 투자 활성화
- 나. 사업내용: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출자 및 관내 투자대상 기업 발굴·연계 지원
- 다. 사업기간: 2027년~2029년(3년간)
- 라. 출자금액: 금1,000백만 원(도 250 / 시 250 / 춘천 250 / 강릉 250)

(단위: 백만 원)

구 분	총사업비	2027년	2028년	2029년
합 계	1,000	500	250	250
도 비	250	125	62.5	62.5
시 비	250	125	62.5	62.5
춘 천	250	125	62.5	62.5
강 릉	250	125	62.5	62.5

마. 출자방식: 원주시(부담금)→강원특별자치도(공기관위탁)→강원테크노파크
바. 투자대상

- 특구법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한 지 3년 이내의 비상장 기업
- 정부출연연구기관·과학기술원 등 연구원 창업 및 교원창업을 통해 설립한 3년 이내 중소벤처기업
- 특구 내 본점, 연구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중소·벤처기업 중 딥테크 기업

사. 의무투자: 지자체 출자금의 2배수 이상을 해당 지역 투자

제6차 제1호 연구개발특구펀드 조성(안)

- ◆ 조성주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 펀드운용: 대덕벤처파트너스
- ◆ 조성기간: 2026년~2029년(4년간) * 운용: 2027년~2035년(2년 연장가능)
- ◆ 조성규모: 200억 원(특구재단 40, 지자체* 40, 민간 120)
 - * 강원(10억), 대구(20억), 전북(10억)
- ◆ 투자대상: 딥테크 공공기술 기반 초기단계 연구소기업 및 출연연·직할연·과기원 연구원 창업 및 교원창업 기업에 중점투자

아. 기대효과

- 연구개발특구펀드의 투자대상인 초기단계 딥테크 기업 등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통해 원주지역 기술창업 기업의 자금조달 및 성장 기반 강화
- 원주시 출자금이 지역 내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로 연결되어 지역 기업의 스케일업 및 사업화 촉진

3. 참고사항: 관계법령

관계 법령 발췌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발전과 특구 간의 연계·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26.]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원주시장

1.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9조, 제11조, 제16조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나. 추진 필요성

-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드론 분야 관련 특화된 전문성 및 네트워크를 기반을 갖춘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에 본 사업을 위탁하여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하고자 함

2 위탁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 및 드론기술개발·실증 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드론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한 드론 활용 서비스모델의 도심 내 실증 지원
- 드론 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로 신성장 동력 확보

다. 수탁사업자: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 원주시 지역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모빌리티 산업부를 운영중
- 드론 분야 관련 특화된 전문성 및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음

라. 사업개요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운영(국토부 공모사업)

- 지정기간: 2025. 7. 29.~2027. 7. 28.(제3차 지정)

- 지정구역

연번	지정구역	위치	면적(m ²)	고도
1	원주양궁장	문막읍 동화리 108-2	27,702	150m 미만
2	매지저수지	홍업면 매지리 1382-1	347,002	150m 미만

- 참여사업자: 관내드론업체

- 규제특례: 4개 항목

1.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항공안전법 제124조)
2. 비행승인(항공안전법 제127조)
3. 특별비행의 승인(항공안전법 제129조제5항)
4. 적합성평가(전파법제58조의2)

- 사업분야: 물류배송, 방역, 산불감시, 정찰, 기체테스트 등 실증분야 전반

- 추진현황

- 2021. 2. 제1차 지정 선정
- 2021. 7. 제1차 지정구역 운영(2021. 7. 29.~2023. 6. 2.)
- 2023. 6. 제2차 지정 선정 및 운영(2023. 6. 30.~2025. 6. 30.)
- 2025. 7. 제3차 지정 선정 및 운영(2025. 7. 29.~2027. 7. 28.)
- 2026. 8.~10. 드론특별자유화구역 4차 지정 공모 중
- 2027. 7. 제4차 지정시 운영(2027. 7. 29.~2029. 7. 28.)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

-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으로 특별비행승인, 안전성인증 등 드론 관련 각종 규제가 면제 또는 간소화되어 기업들의 드론 연구, 개발에 필요한 실증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특례구역
- 해당 구역에서의 규제 특례는 참여사업체에만 한정

○ 드론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사업

- 사업기간: 2027. 1.~12.

- 사업비: 50,000천원(시비)

- 지원대상: 관내 드론업체

※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참여기업 우선 대상

- 지원규모: 기업당 최대 20,000천원 이내
- 추진방법: 참여기업 공모 후 사업계획서 평가에 따른 선정
- 지원분야: 물류배송, 방역, 산불감시, 정찰, 기체테스트 등 실증분야 전반
- 지원내용
 - 시제품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 인증 및 성능시험 비용, 드론보험료,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참여 지원 등
- 추진현황

연도	지 원 기업수	지원액(천원)	추진실적
2024년	1개	39,000	- 고중량 운송 드론 개발 - 중장거리 임무 수행 드론 개발
2025년	2개	100,000	- 응급의료지원드론 개발 - 방제모듈개발 및 방역 실증
2026년	2개	50,000	- 2026년 사업추진 중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50,000천 원

(단위: 천 원)

구 분	계	기업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액	50,000	40,000	10,000

4. 향후 추진 일정

- 2027. 1. 세부사업계획 수립
- 2027. 1. 위·수탁 협약 체결
- 2027. 1.~12. 사업추진
- 2028. 1.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5. 법적 근거 (별첨)

□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9조(드론산업의 저변확대)

-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드론사용사업자·드론교통관리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술개발)

- ① 시장은 드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드론의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진흥원은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2.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지원
3. 산업디지털전환 기반 조성
4.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스타트업 지원
5. 산·학·연·관 교류 협력사업 및 협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 등의 위탁 사업 등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원주시장

1.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조례」 제4조 및 제7조
-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제3조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나. 추진 필요성

- 내연기관 부품 수요 감소 및 전동화·자율주행 부품 수요 확대 등 자동차 산업 패러다임의 급격한 전환 대응하고자 함
- 미래차 전환을 위한 장비 도입 및 기술개발 비용을 적극 지원하여 원주시에 소재한 부품기업의 생존 위기를 극복하고자 함

2. 위탁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미래모빌리티 부품제조 전환지원 사업

나. 사업목적

- 내연기관에서 미래차로의 전환 패러다임에 대응하여 지역 내 자동차 부품 제조기업의 기술경쟁력 확보

다. 수탁사업자: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 원주시 지역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모빌리티 산업부를 운영 중
- 자동차 분야 관련 특화된 전문성 및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음

라.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7. 1.~12.
- 사 업 비: 50,000천 원(시비)

마. 사업내용

- 미래차 부품 시제품 제작 지원
 - 배터리·모터·센서 등 미래차 핵심부품의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 미래차 부품 전환을 위한 제조공정 개선 지원
 - 미래차 부품 생산을 위한 설비 개선 및 공정 자동화 지원
 - 생산성 향상 및 데이터 기반 품질관리 체계 구축 지원
- 공인 시험 연구기관을 통한 성능검증 및 국제표준인증 비용 지원
 - 부품 성능·내구성·전자파 적합성 등 시험평가 지원
 - 국제표준인증 획득을 위한 진단·컨설팅 및 심사비용 지원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50,000천 원

(단위: 천 원)

구 분	계	기업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액	50,000	40,000	10,000

4. 향후 추진 일정

- 2027. 1. 세부사업계획 수립
- 2027. 1. 위·수탁 협약 체결
- 2027. 1.~12. 사업추진
- 2028. 1.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5. 법적 근거 (별첨)

[붙임 1] 관계법령

□ 원주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4조(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기반을 확충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융합 촉진 지원 사업
2. 산·학·연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
3.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

제7조(수출기업 지원)

시장은 관내 수출기업의 체계적 육성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1. 유망 수출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2. 무역, 해외마케팅 전문 인력 양성·연수
3. 무역 기반조성 또는 활성화 사업
4. 국내외 수출상담회 등 참가지원 사업
5. 국내외 박람회·전시회 등 참가지원 사업
6. 해외 통상촉진, 판촉행사 지원 사업
7. 수출 교육, 컨설팅사업
8.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여건조성과 통상활동 지원 사업
9. FTA 대응을 위한 교육 또는 컨설팅, 행사지원 사업

□ 원주시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조(첨단산업 육성 기본방향)

- 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견인하여 국제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첨단산업의 육성 및 해당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금·기술개발·산업단지 조성 및 인력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③ 시장은 첨단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첨단산업 간에 우선순위를 정하여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진흥원은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2.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지원
3. 산업디지털전환 기반 조성
4.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스타트업 지원
5. 산·학·연·관 교류 협력사업 및 협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 등의 위탁 사업 등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 개발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10. .

제 출 자 : 원주시장

1.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가. 추진근거

-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9조, 제11조, 제16조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나. 추진 필요성

- 산불 진화·인명 구조·군사 작전 등에 사용되는 특수목적성 드론산업을 지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드론 산업 경쟁력을 모두 강화하고자 함.
- 외산(특히 중국산) 부품 의존도가 높은 통신 모듈, 항법 장치, 비행 제어기 등의 국산화율을 높여 공급망 교란 리스크에 대응하고 국가 안보 및 공공 인프라의 보안성과 국내 드론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

2. 위탁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 개발지원사업

나. 사업목적

- 공공성이 강한 특수목적성 드론 기술·부품의 개발지원을 통해 지역 내 드론산업의 생태계 구축 및 경쟁력 강화

다. 수탁사업자: (재)원주미래산업진흥원

- 원주시 지역주력 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모빌리티 산업부를 운영 중
 - 드론 분야 관련 특화된 전문성 및 네트워크 기반을 갖추고 있음
- 라.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7. 1.~12.
- 사 업 비: 50,000천 원(시비)

마. 사업내용

- 국방·소방·재난안전 등 특수목적 드론 시제품 제작비용 지원
 - 특수 임무 수행을 위한 기체 설계·제작 및 핵심부품 연동 지원
 - 자율비행·군집비행·객체인식 등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 전파 및 비행안전성 인증 등 필수규격 획득 지원
 - 전자파 적합성 및 KC 인증 등 시험·인증 비용 지원
 - 최대이륙중량 25kg 초과 기체의 성능시험 및 비행안전성 인증 지원
- 연구기관과 연계한 기술고도화 컨설팅 지원
 - 산학연 전문가와의 심층 기술 멘토링 제공 및 기체 성능 고도화 지원

3. 소요예산

- 소요예산: 50,000천 원

(단위: 천 원)

구 분	계	기업지원	일반운영비
예산액	50,000	40,000	10,000

4. 향후 추진 일정

- 2027. 1. 세부사업계획 수립
- 2027. 1. 위·수탁 협약 체결
- 2027. 1.~12. 사업추진
- 2028. 1.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5. 법적 근거 (별첨)

[붙임 1] 관계법령

□ 원주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 조례

제9조(드론산업의 저변확대)

- ① 시장은 드론산업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을 할 수 있다.
1. 드론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2.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
 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드론사용사업자·드론교통관리의 저변확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기술개발)

- ① 시장은 드론산업과 관련된 기술개발을 장려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드론의 연구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 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16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진흥원은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미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연구
2.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지원
3. 산업디지털전환 기반 조성
4.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스타트업 지원
5. 산·학·연·관 교류 협력사업 및 협업 운영에 관한 사업
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 등의 위탁 사업 등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원주시 보호구역 실태조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가.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호구역 실태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갖춘 한국도로교통공단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특히 보호구역 실태조사 단계에서 전문기관의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신뢰성 있는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향후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관리계획 수립 등에 활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관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66개소

구분	합계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개소수(개)	66	56	10
총 연장(m)	22,400	19,395	3,005

나. 위탁사무 내용

- 관내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조사 및 분석
-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등 시설물 현황조사 및 관리 실태 점검
- 개별 교통환경 문제점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검토 및 제시
- 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및 관련 도면 작성
- 보호구역 통합관리시스템 자료 입력 및 현행화

다. 취탁기간: 협약체결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라. 위탁기관: 한국도로교통공단

3. 참고사항

가. 공공기관 위탁 추진근거

- 「도로교통법」 제1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나. 추진일정

- 2026. 10. 공공기관 위탁 의회 동의
- 2026. 12. 공공기관 위수탁 협약 체결

2027년 (재)원주문화재단 운영 출연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 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에 따라 출연기관에 출연금·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나.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여 매년 예산안 심의 전 의회에 출연기관에 대한 사전의결을 거치고 있음
- 다. 원주시 출연기관 (재)원주문화재단의 2027년 운영지원 출연동의안에 대한 사전의결을 통하여 재단운영 및 사업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및 현원(2026. 8. 31.기준)

(단위: 명)

구분	계	대표이사	사무처장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50	1	1	2	5	6	13	22
현원	39	(1)	(1)	1	4	6	12	16

나. 2027년도 출연금 편성현황

(단위: 천 원)

세부사업명	2027 본예산(A)	2026 2추(B)	증감(A-B)
계	6,404,980	6,278,945	126,035
○ 원주문화재단 운영비	3,459,980	3,352,345	107,635
○ 원주문화재단 고유사업비	2,790,000	2,771,600	18,400
- 지역문화예술 육성지원사업	1,020,000	1,020,000	-
- 기획전시사업	120,000	120,000	-
- 축제 및 공연사업	1,310,000	1,291,600	18,400
- 문화도시 조성사업	150,000	150,000	-
- 문화예술교육사업	55,000	55,000	-
- 시민문화사업	135,000	135,000	-
○ 꿈의 오케스트라(교육경비)	120,000	120,000	-
○ 청소년 전문예술인 양성(교육경비)	35,000	35,000	-

생활예술 지원사업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 도비 보조사업인 ‘생활예술지원사업’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원주문화재단에서 위탁 운영 하기로 함

2. 주요내용

가. 원주문화재단 현황

- 위치: 원주시 향교길 77, 남산골문화센터
- 설립일: 2010. 11. 29.
- 설립목적: 원주의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함
- 정·현원 현황(2026. 8. 31. 기준)

구분	계	대표이사	사무처장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50	1	1	2	5	6	13	22
현원	39	(1)	(1)	1	4	6	12	16

※ 조직: 2실, 8팀 / 파견공무원 3명(현원제외)

나. 위탁내용

- 생활예술 지원사업 추진(공모, 선정, 정산보고 등)
- ※ 사업개요: 관내 생활예술단체(인)의 분야별 지원

3. 위탁기간: 2027. 1. 1. ~ 12. 31. (1년) / 매년 도비보조금 교부

4.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가. 소요예산: 140,000천 원(도비매칭 50% / 도비·시비 각 70,000천 원)

5. 참고사항

가. 추진근거

-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
-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14조

나. 추진일정

- 2026. 12. 2027년 본예산 편성
- 2027. 1. 2027년 도비보조금 신청
- 2027. 2. 2026년 정산서 검토 및 도비보조금 교부

강원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 가. 강원특별자치도와 시·군 공동 출연을 통해 강원 관광산업 진흥 및 관광 경쟁력 강화
- 나. 원주시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자원 개발, 관광 홍보 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강원관광재단과의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급변하는 관광시장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30백만 원(매년)
- 출연대상: (재)강원관광재단
- 예산확보: 2027년 본예산
- 출연근거: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나. 강원관광재단 주요 사업 내용

- 관광콘텐츠 발굴 및 통합·홍보 마케팅
- MICE 관광 활성화 사업
- 관광정보 조사·분석 및 관광진흥 네트워크 구축

3. 참고사항: 강원관광재단 개요

- 기 관 명: 재단법인 강원관광재단
- 설 립 일: 2020. 10. 13.
※ 2023. 6. 15. 기관명칭 변경(강원도관광재단→강원관광재단)
- 조직현원: 1본부 3실 10팀 43명
- 2026년 출연금 규모: 4,928,755천 원(도 4,388,755천 원 / 시·군 540,000천 원)

원주시 댄싱카니발 사무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 가. 원주문화재단은 축제 기획 및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축제의 기획부터 운영까지 체계적으로 업무 수행 가능하며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 할 수 있음
- 나. 원주문화재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제의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다년간 댄싱카니발을 개최해온 만큼 콘텐츠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을 통하여 축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속가능한 축제가 가능 하도록 함
- 다.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축제의 공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여 지역관광 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주요내용

- 가. 위탁 개요
 - 위탁금액: 1,212백만 원
 - 위탁대상: (재)원주문화재단
 - 예산확보: 2027년 본예산
 - 위탁 근거
 - 1) 「원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1조
 - 2) 「원주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
- 나. 주요 사업 내용
 - 축제 기본계획 수립 및 안전계획 수립
 - 축제 홍보 마케팅
 - 댄싱카니발 축제 진행
 - 축제 평가 및 환류, 정산

3. 참고사항

- 가. 원주문화재단 개요
 - 기 관 명: (재)원주문화재단
 - 설 립 일: 2011. 01.
 - ※ 2012년부터 댄싱카니발 축제 운영
 - 조직현원: 1처 2실 9팀 42명

제6기(2027~2030) 원주시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2026. 10 . .

제 출 자: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 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제6기(2027~2030)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 및 시의회 보고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 나.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사회보장 전략 체계를 수립하여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복지 역량 강화 등 급변하는 복지 환경에 대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략체계

1) 시민중심의 통합돌봄망

- 원주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 내실화
- 원주형 성장바우처
- 신중년 종합지원센터 운영
- 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
- 고용-복지 징검다리 지원
- 청년·대학생 대상 콘텐츠 교육

2) 지속가능한 생활안정

- 천원주택으로 청년·신혼부부 주거안정
- 시간제보육서비스 부모부담 반값지원
- 원주시 청년 취·창업역량지원 강화

- 경력보유 여성 재취업 학교운영
- 원주형 상생일자리 안심공제 지원
- 저소득 주민생활안정 지원 강화
- 원주시 정착 청년 4배 통장

3) 건강한 도시 원주

- 건강이음 매니저 양성 및 운영
- 치매안심마을 조성 및 운영
- 환자중심 치매관리시스템 확충
- 지역사회 맞춤형 정신건강 프로그램 운영
- 생활권 건강관리 거점운영 강화

4) 모두가 안전한 원주

- 원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 독거어르신 안전확인 고도화
- 임산부 및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 아동학대 예방 조기지원
-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확대
-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

5) 함께하는 공동체

- 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 학성동 복합문화공간 조성
- 스마트 노인·스마트 경로당 지원
- 장애인커뮤니티센터 조성
- 흥업면 노인종합복지관 분관 신설

나. 지역사회보장 발전 전략체계

1) 사회보장급여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 읍·면·동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운영
- 1인 가구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고독·고립 예방 및 지원 사업
- 부정수급 예방 홍보
- 복지급여 부정수급 조사 및 환수

2) 담당인력 역량강화

- 민관협력 통합사례관리 강화
-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한 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기부자 예우
- 원주사회복지학교 운영 활성화
- 가가호호사업 활성화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

3)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

- 원주시 실무분과 운영 활성화
- 사회보장 정책개발 역량 강화
- 읍·면·동협의체 위원 역량 강화
- 읍·면·동 협의체 모니터링 및 컨설팅
- 아이키움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 청년 일자리 매칭 플랫폼 구축 및 운영

4) 지역사회보장 인프라 확충

- 이동복지관 확대 운영
- 원주시민 참여형 정책발굴단 운영
- 원주기후시민회의·기후도시 추진단 설치 및 운영
- 디지털 서포터즈 운영
- 디지털 평생학습 역량 강화

3. 추진 경과

- 가. 2025. 8.~12. : 원주시 지역주민 욕구조사
 - 나. 2026. 4. : 제6기('27~'30)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 계약
 - 다. 2026. 4.~9. : 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안) 수립 연구용역 실시
 - 라. 2026. 8.~9. : 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안) 주민 공고
 - 마. 2026. 9. : 제6기('27~'30)지역사회보장계획(안) 심의
- ※ 심의 위원회: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위원 18명

4. 기대효과

- 가. 2027년~2030년(4개년) 중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통해 지역의 복지에 대한 수요와 자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회보장 발전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나. 지자체 사업을 중심으로 사회보장전략 체계를 수립하고,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한 정책노력을 제시하여 사회보장 지자체 정책 관련 중기 이정표의 역할 수행

5. 참고 사항

- 가. 법적근거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 나.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의무화 (2005. 7월부터 시행)
 - 제1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2007년 ~ 2010년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2011년 ~ 2014년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 2015년 ~ 2018년
 -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2019년 ~ 2022년
 -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 2023년 ~ 2026년

관계법령 발췌서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약칭: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2025. 10. 23.] [법률 제20929호, 2025. 4. 22., 일부개정]

제4장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운영체계 등

제1절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제35조(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회보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역사회보장계획(연차별 시행계획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와 해당 시·군·구 의회의 보고(보고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은 제외한다)를 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⑦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 내 사회보장 관련 실태와 지역주민의 사회보장에 관한 인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이하 “지역사회보장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시 지역사회보장조사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7. 3. 21.>

③ ~ ⑥, ⑧ ~ ⑨< 생략 >

원주 도시관리계획(시설:학교602호)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필요성)

가. 지방대학 진학에 따른 주거 부담 완화 및 강원도 타 대학에 비해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충족하고자 BTL기숙사를 신축하고, 편의 증진을 위해 테니스장 창고 및 락카룸을 신설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도시관리계획 입안(안)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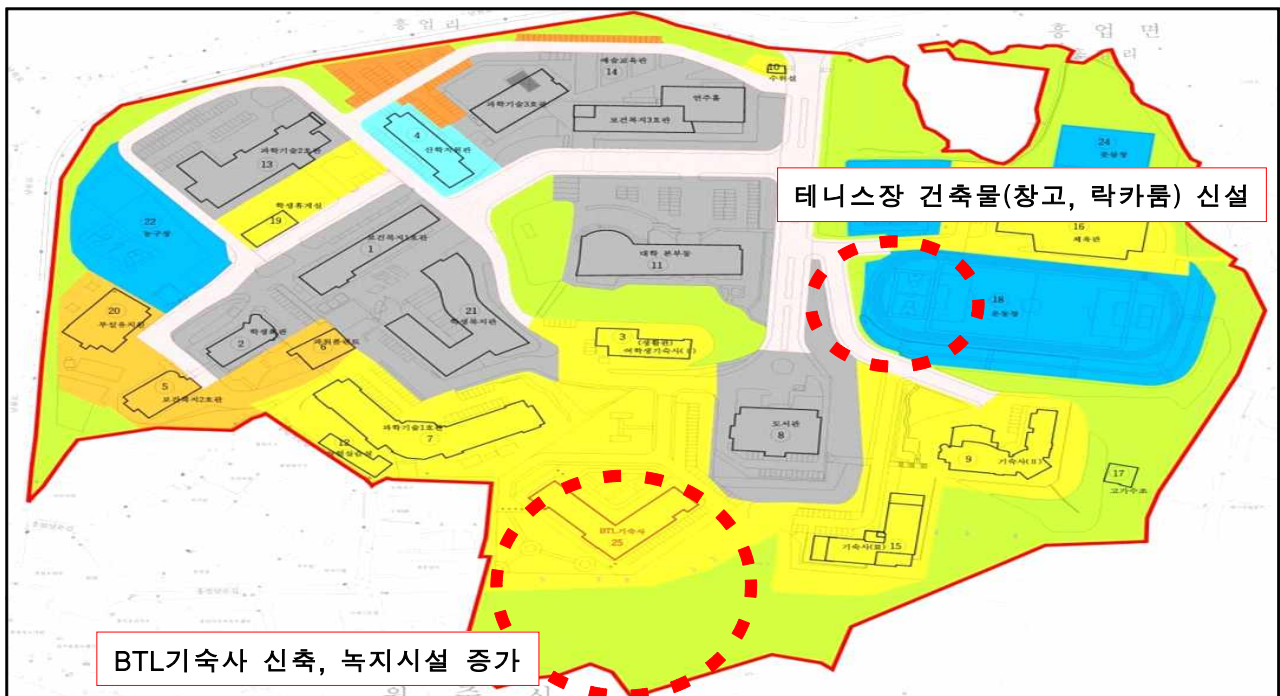
가. 위 치: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흥업면 흥업리 7번지 일원

나. 사업기간: 2026 ~ 2029년

다. 내 용:

- 명칭 변경(강릉원주대학교 → 강원대학교 원주캠퍼스)
- 구역계 변경(기정 160,230㎡ → 변경 176,005㎡ 중) 15,775㎡)
-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BTL기숙사 신축, 녹지시설 증가, 테니스장 창고·락카룸 신설)
- 건폐율 변경(기정 20% → 변경 30% 중) 10%)

라. 사 업 비: 329억원 (국비 100%)



원주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 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3통 및 4통 일원) 중 사업기간 내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주민과의 융화가 필요한 주민 역량 강화교육 운영 등 일부 사업의 민간위탁 필요
- 나. 개운동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주민의 정주여건 및 삶의 질 개선

2. 주요내용

- 가.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기본계획 수립(변경) 지원
- 나. 단위사업(설계, 공사) 추진 지원(주민의견 수렴, 대내·외 홍보 등)
- 다. 주민역량 강화교육 운영
- 라. 주민협의회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마. 사업 홍보 및 아카이빙
- 바. 그 밖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추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3. 참고사항

- 가. 사업 대상지의 특성 및 관련 법령의 이해도가 높은 전문인력을 통한 사업의 체계적 추진 및 내실화
- 나.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공익성과 효율성의 조화로 행정 능률이 향상되고 행정력 절감 효과

원주시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가.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된 태장2동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행정 연계 중간조직인 ‘현장지원센터’를 운영하여 도시재생사업 현장대응 및 민관협력형 거버넌스 구축으로 선진적 도시재생기반 마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반사항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관련 사업의 추진 지원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주민 역량강화 및 현장 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마을기업 등 도시재생 사회적경제조직의 창업 및 운영지원
- 태장2동 주민협의체 운영 및 지원
- 주민참여 및 공동체(마을관리협동조합 등) 활성화 및 지원
- 도시재생 거버넌스 구축, 지역 내 유관기관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 도시재생사업 홍보
- 그 밖에 원주시장이 도시재생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나. 수탁자격: 태장2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다. 민간위탁기간: 2027. 2. 1. ~ 2029. 12. 31.(3년간)

3. 참고사항

가. 도시재생 관련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의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운영으로 중간지원조직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나. 민간기관의 업무 유연성, 창의성을 통한 차별화된 원주시 특색있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2027년도 강원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원 주 시 장

1. 제안이유

- 전문기관 출연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발굴 및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한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통한 정책자문 및 사전컨설팅이 상시 가능하도록 하여 적극적인 주요현안사업 추진
- 의견 수렴에 필요한 포럼, 세미나 등 개최로 정책방향 결정 기초 토대 마련

2. 주요내용

가. 출연개요

- 출연금액: 100백만 원
- 출연대상: 강원연구원
- 예산확보: 2027년 본예산
-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경비)

나. 추진내용

- 지역발전을 위한 적극적 정책 발굴
 - 주요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과제 수행 및 발굴
 - 각종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타당성 분석, 추진방향 등 정책자문
- 대규모 공모사업 유치(추진 시)

- 중앙부처 정책동향 및 공모사업 분석자료 정기 제공에 따른 정보수집
-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 **각종 평가 대응**
 - 출연기관 평가 및 재정영향 평가 등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 발굴 등 현장중심 정책개발 활성화**
 -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특례 발굴 및 반영을 위한 부서 협의, 자문 등 협력체계 구축
 - 미래전략 사업 등 주요 현안 관련 포럼, 세미나 개최 등

다. 추진계획

- 2026. 12. 예산 확보
- 2027. 상반기. 출연금 교부
- 2027. 1.~12. 현안 추진 및 정책 발굴 등 협력체계 구축 및 수행

3. 참고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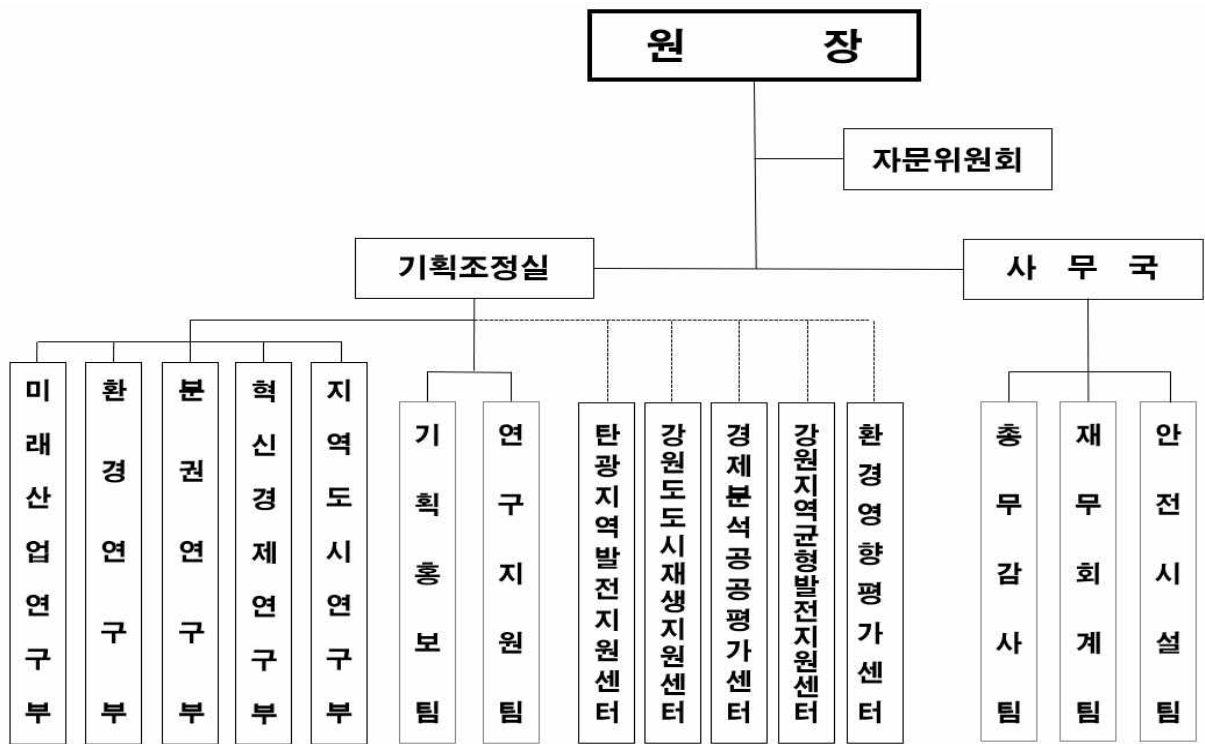
- 강원연구원 현황 : [별첨 1]
- 관계법령 : [별첨 2]

[별첨 1]

강원연구원 현황(원주시 관련 연구실적)

가. 강원연구원 현황

- 명 칭: 강원연구원
- 설 립: 1994. 9. 1.
- 설립목적: 경제·사회·복지·문화 등 각종 부문에 관한 체계적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도·시·군정을 지원함으로써 강원발전에 기여
- 기구 및 인력(2026.10. 기준)



구 분	합계	원장	연구직					일반직				무기계약직		
			소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부연구위원	책임연구원	소계	1급	2급	3~5급	소계	행정사무원	공무직
정원	66	1	39	11	28			15	1	3	11	11	3	8
현원	56	1	32	6	7	12	7	14	-	3	11	9	3	6

○ 지역 역점 시책 및 현안사항 추진을 위한 과제수행

- 수행과제 현황

※ 2026년 과제는 현재 진행 중 / 신규 과제 발굴을 위한 협의 계속 진행

[illegible]

○ 시·군 정책지원관 운영

- 지역 맞춤형 ‘현장중심 정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담자를 지정하여 연구 과제 발굴·수행, 공동포럼 개최 등 다양한 시·군 협력사업 추진
 - 8개 시·군과 연구원 간의 밀착도를 높이고 수준 높은 정책지원을 위해 시·군 정책지원관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 중
- 시·군별 복수(2~3인) 담당제를 도입하여 상호 보완 및 협업을 강화하고, 다양한 전공 분야의 융복합 자문 제공 가능

시 군 별	정책지원관		
춘천시	이원학 선임연구위원	조명호 연구위원	정윤희 부연구위원
	033-250-1361	033-250-1364	033-250-1363
원주시	김태동 연구위원	오윤정 책임연구위원	조명호 연구위원
	033-250-1366	033-250-1342	033-250-1364
강릉시	유영심 부연구위원	최익창 부연구위원	김수연 부연구위원
	033-250-1387	033-250-1386	033-250-1362
동해시	김경남 선임연구위원	정영호 책임연구위원	정대현 부연구위원
	033-250-1325	033-250-1341	033-250-1335
태백시	신지훈 책임연구위원	이원학 선임연구위원	박재형 부연구위원
	033-250-1336	033-250-1361	033-250-1355
속초시	김재진 선임연구위원	추용욱 연구위원	양 철 부연구위원
	033-250-1396	033-250-1395	033-250-1346
삼척시	조근식 부연구위원	이영주 선임연구위원	김태후 부연구위원
	033-250-1356	033-250-1365	033-250-1337
홍천군	추용욱 연구위원	백영미 부연구위원	김수연 부연구위원
	033-250-1395	033-250-1367	033-250-1362
횡성군	조근식 부연구위원	전지성 연구위원	
	033-250-1356	033-250-1334	
영월군	정영호 책임연구위원	한영한 선임연구위원	임재영 부연구위원
	033-250-1341	033-250-1352	033-250-1385
평창군	한영한 선임연구위원	김태동 연구위원	
	033-250-1352	033-250-1366	
정선군	전지성 연구위원	정윤희 부연구위원	최익창 부연구위원
	033-250-1334	033-250-1363	033-250-1386
철원군	양 철 부연구위원	임재영 부연구위원	
	033-250-1346	033-250-1385	
화천군	박재형 부연구위원	오윤정 책임연구위원	강종원 선임연구위원
	033-250-1355	033-250-1342	033-250-1322
양구군	김문숙 부연구위원	박상용 연구위원	유영심 부연구위원
	033-250-1313	033-250-1307	033-250-1387
인제군	신지훈 책임연구위원	박상용 연구위원	김문숙 부연구위원
	033-250-1336	033-250-1307	033-250-1313
고성군	이영주 선임연구위원	김재진 선임연구위원	
	033-250-1365	033-250-1396	
양양군	백영미 부연구위원	김경남 선임연구위원	정대현 부연구위원
	033-250-1367	033-250-1325	033-250-1335

○ 시·군별 출연현황

(2026. 10. 현재)

시군명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계	15개 시군 (9억 원)	18개 시군 (11억 원)	17개 시군 (10억 원)	17개 시군 (10억 원)	17개 시군 (10억 원)
춘천시	1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원주시	1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강릉시	1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1억 원
동해시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태백시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속초시	-	1억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삼척시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홍천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횡성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영월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평창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정선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철원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화천군	-	5천만 원	-	-	-
양구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인제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고성군	-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양양군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운영재원)

- ① 지방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및 보조금
 - 2. 제14조에 따른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 3. 그 밖의 수입금
-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강원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5조(운영경비)

- ② 도 및 시·군은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2027년도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 출연동의안

1. 제안이유(필요성)

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원주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원주시자원봉사센터를 운영 및 지원하고 있음

나. 법 제19조 및 「원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원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자원봉사센터 출연금 예산안 심의 전 원주시의회에 사전의결을 거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원 및 현원 현황(2026. 9. 30. 기준)

(단위: 명)

구 분	합 계	현 황				
		센터장	사무국장	부장	대리	주임
정원	11	1	1	3	4	2
현원	10	1	1	3	0	5

나. 2027년도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사 업 명	2027 본예산 (A)	2026 본예산 (B)	증 감 (A-B)	비 고
합계	807,595	767,282	40,313	
①원주시자원봉사센터 운영	681,475	638,892	42,583	
②자원봉사활동 증진	69,550	65,400	4,150	
③자원봉사 한마당	13,580	10,000	3,580	
④전문 자원봉사 육성	18,390	18,390	-	
⑤청소년 자원봉사스쿨(교육경비)	9,000	9,000	-	
⑥뉴원주민봉사단 운영	5,600	5,600	-	
⑦시민안전봉사단 운영	7,000	7,000	-	
⑧시자원봉사센터 기능보강	3,000	13,000	△10,000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26. . .

제 출 자 : 원주시장

1. 제안이유

2027년 원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출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한국지방세연구원

나. 설립목적

- 「지방세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에 따라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을 하기 위함

다. 설립일 : 2011. 2. 28.

라. 2027년 출연금

- 출 연 금 : 27,118천원
- 산출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산출내역 : 2025년도(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0
 $[271,184,086\text{천원} \times (1.0 \div 10,000)] = 27,118\text{천원}$

마. 출연금 산정 비율

- 2027년 : 1만분의 1.0

3. 참고사항

가. 한국지방세연구원 일반현황

나. 관계법령

1. 설립목적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 조성

※설립 근거: 지방세 기본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과 기초 자치단체 등 다양한 지방세 현안 및 쟁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모든 자치단체가 공동 출연

2. 연혁

- ① 2011. 2. 28. : 법인설립
- ② 2011. 4. 20. : 연구원 개원

3. 구성

- ① 이사회 : 12명의 이사와 2명의 감사
- ② 인원현황
 - 원장, 부원장을 포함 정원78명(현원64명)

4. 주요사업

- 지방재정·세제 발전 및 확충을 위한 연구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 협력·지원 사업
 - 지방세공무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방세 교육
 - 지방세 쟁송사무 지원, 시가표준액 조사 사업
 - 지방세 법령정보시스템 운영(www.olta.re.kr)

지방재정법

[시행 2026. 7. 1.] [법률 제21328호, 2026. 2. 5., 일부개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8.>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8.>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4. 5. 28.>

지방세기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17호, 2026. 9. 29., 일부개정]

제151조(지방세연구기관의 설립·운영) ① 지방세입 제도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이와 관계된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위한 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운영하는 법인으로 지방세연구기관(이하 “지방세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20. 12. 29.>

② 지방세연구원의 이사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하고, 감사 2명을 둔다. 이 경우 이사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각각 협의하여 공무원, 교수 등 지방세에 대한 조예가 있는 사람을 각각 같은 수로 추천·선출하되, 이사장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협의하여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출한다.

③ 지방세연구원의 원장 및 감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며, 이사장과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④ 지방세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이하 이 조에서 “경영공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9.>

1. 해당 연도의 경영목표, 예산 및 운영계획
2. 전년도 결산서
3. 전년도의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4. 전년도의 인건비 예산 및 집행 현황
5. 경영실적의 평가결과

6. 외부기관의 감사결과, 조치요구사항 및 이행결과

7. 기본재산 및 채무 변동 등 재무 현황

8. 그 밖에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⑤ 경영공시의 시기 및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3. 12. 29.>

⑥ 지방세연구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5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29.>

⑦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세연구원에 지방세입과 관련한 연구·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2023. 12. 29.>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② 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용도,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0. 2.] [대통령령 제36728호, 2026. 9. 29., 타법개정]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0. 9. 8.>

1. 1만분의 1.2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 제안안전

- 가. 시유재산 취득안(원주 호국보훈공원 조성)
- 나. 시유재산 처분안(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 시유지 매각)
- 다. 시유재산 취득안(공공도서관과 연계한 놀이형 독서공간 조성)
- 라. 시유재산 취득안(귀론 저수지 편입토지 미지급용지 매입)
- 마. 시유재산 취득안(행구동 오리현 공영주차장 조성)
- 바. 시유재산 취득안(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 사.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 아.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원주시립미술관 건립)
- 자. 시유재산 취득 변경안(원주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

2. 제안이유(필요성)

- 가. 현충탑 및 주변 시설 노후화에 따른 참배환경 정비와 안내·휴게시설 확충 등 시민 이용 편의 개선하고 시민이 일상에서 국가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릴 수 있는 보훈문화 거점공간 조성하고자 함.
- 나. 일반재산 목적으로는 동일인의 사유지에 둘러싸여 고립되어 있기에 계속 활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7호 규정에 의거 수의 매각 하고자 함.
- 다. 기존 공공도서관 인접 부지 및 건축물을 매입하여 도서관과 연계한 책·놀이·휴식이 어우러진 놀이형 독서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복지 환경을 확충하고자 함.
- 라. 해당 토지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인 귀론저수지에 편입되어 현재까지 저수지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사유지로, 편입 당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지급용지로서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간 미보상 상태를 해소하고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귀론저수지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함.

- 마. 바람길숲 이용객 증가로 인한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도로변 불법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구동 일원 사유지 2필지를 취득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
- 바. 대중교통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안정적인 시내버스 정책 실현을 위한 금대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상 부지를 매입(토지 12필지)하고 건물 3동(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각 1동)을 신축하고자 함.
- 사. 장양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확장 사업은 2025년 제6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나, 친환경 대중교통 정책 전환에 적극 대응하고 대중교통 에너지 수급 문제 해소하고자 수소충전소 신축 추가로 인해 취득안을 변경하고자 함.
- 아. 원주시립미술관 건립사업은 2020년 제7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기존 건축물 리모델링” 취득으로 원안 의결되었으며, 2021년 제5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기존건물 리모델링 및 증축”으로 취득 변경이 원안 의결되었으나, 건립 추진 과정에서 공사비 및 감리비 등 총사업비가 증가하여 취득안을 변경하고자 함.
- 자. 부론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은 2025년도 공유재산심의회 및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사업부지(하천구역) 내에서는 화장실·관리사무실 등 필수 부대시설 설치의 제약에 따라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파크골프장 인접 하천구역 밖의 사유지 1필지를 매입하고 건물 3동(관리사무실·화장실·휴게실)을 신축 취득하는 내용으로 취득안을 변경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태장동 현충탑 부지 내에 건물 1동(60㎡) 및 공작물(전망대·기억의 벽), 입목죽 식재(4,000주), 둘레길 조성
- 나. 사유지인 문막읍 동화리 산127번지(임야 8,331㎡)를 수의 매각
- 다. 사유지인 태장동 1054-1번지 토지(대지 486㎡)와 건물(130㎡)을 매입 후 기존 건물 증축(150㎡)하여 놀이형 독서공간 조성
- 라. 저수지 미지급용지인 단구동 873번지(답 3,418㎡)의 지분(1/2)을 매입
- 마. 사유지인 행구동 943-2번지(대 693㎡), 342-4번지(대 218㎡)를 매입 하여 오리현 공영주차장 조성
- 바. 금대리 일원의 토지 12필지(12,000㎡) 매입 및 건물 3동(1,500㎡)를 신축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 사. 장양리 일원의 토지 12필지(11,041㎡) 매입 및 건물 신축을 2동(816㎡)에서 3동(1,916㎡)으로 변경하여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 아. 태장동 1191번지 내에 시립미술관의 연면적을 변경(5,525㎡→4,974㎡)하고, 건축비를 증액(15,000백만원→20,400백만원)
- 자. 부론면 흥호리 740번지 외 10필지에 파크골프장(18홀)을 조성하고 사유지인 부론면 흥호리 744-2번지(답 3,185㎡)를 매입하여 건물 3동(69㎡)를 신축

시유재산 무상대부(갱신) 및 영구시설물 축조(안)

1. 제안이유

- 가. 한국폴리텍Ⅲ대학 원주캠퍼스에서 원주시 소유 토지에 고용노동부 BTL 사업 신청을 통해 교육관 신축을 추진하고 있음.
- 나. 교육관 신축을 위한 시유재산 무상대부 및 영구시설물 축조(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함에 따라 「원주시 의회 기본 조례」 제26조제2호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대부 토지	· 원주시 우산동 170 및 182번지
대부 면적	· 36,461㎡ (170번지 : 32,138㎡, 180번지: 4,323㎡)
소 유 자	· 원주시
대부기간	· 영 구 (5년단위 갱신)
대 부 료	· 무상 대부
무상 및 영구시설물 축조 근거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48조제2항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9조제5항
대 부 자	· 한국폴리텍Ⅲ대학 원주캠퍼스
대부목적	· 노후 3공학관 철거 후 미래 성장동력 교육시설 신축 - 미래자동차과 신설 / 반도체시스템과 신설 - 의료공학과를 디지털헬스케어과로 개편
신축규모	· 연면적 3,900㎡, 지상 3층
신청예정	· 2026년 11월 고용노동부 BTL사업 신청
추정사업비	· 264억 원 (건축비 181억, 설계용역비 9억, 장비비 74억)
시설물 소유권	· 준공과 동시에 고용노동부 귀속

3. 기대효과

- 가. 신성장·첨단 산업 특화 인재 양성으로 청년 취업기회 확대 및 수도권 인구 유출 예방
- 나. 시 재정 부담 없는 미래 성장동력 교육 인프라 확충